##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생명형은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인 통치수단

천 세 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 리왕조때의 법을 안다고 합시다. 그 법도 역시 리조봉건통치배들을 옹호하는 법이였지 결코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법은 아니였습니다.》(《김일성전집》제21권 483폐지)

모든 착취사회의 형벌은 례외없이 착취계급의 국가적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 으로서 착취계급의 리익과 착취제도를 옹호한 반면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고 억누르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탄압의 도구이다. 조선봉건왕조의 형벌도 여기서 례외로 되지 않는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는 생명형, 자유구속형, 역형, 체형, 재산형, 권리와 자격을 박탈하고 인격을 깎는 명예형 등 많은 형벌종류들이 규정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형벌종류들가운데서 생명형은 가장 무거운 최고의 형벌이였다.

조선봉건왕조에서 생명형은 봉건국가와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봉건지배계급의 독재를 실현하며 그들의 신분적특권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반동적인 통치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생명형이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인 통치수단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나선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봉건국가와 봉건통치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였기때문이다.

조선봉건왕조가 존재한 전기간에 걸쳐 봉건적착취와 억압에 시달린 인민들의 투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이 봉건국가와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데 돌려지면 《범죄》로 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였다.

봉건국가의 대표자인 왕과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범죄》에는 생명형의 종류들중에서도 가장 포악한 최대의 극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법전들과 규정들에 의하면 생명형의 종류에는 릉지처참형, 참형, 효수형, 효시형, 부관참시형, 교형, 사사형 등이 있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반역음모로서 사직[《국가》나《조정(궁궐안에 있는 임금이 정치를 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국가기구)》을 이르는 말]을 위태롭게 하거나 종묘(력대의 임금이나 그 안해의 신주를 위해 두고 제사지내기 위하여 지은 사당집)나 산릉(《왕릉》을 달리 이르는 말), 왕릉(왕의 무덤)을 파괴하기 위하여 음모한자와 그에 공모한자는 주모자이건 추종자이건 관계없이 다 릉지처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릉지처참은 사람의 각을 떠서 죽이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였다. 릉지처사 또는 릉지라고도 하였다. 이 형벌은 범인을 죽인 다음 그 시체를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잘라서 각지에 조리를 돌리는 형벌이였다. 릉지처참은 그 집행에 수레

를 리용하는 경우에 차렬형이라고도 하였다.

릉지처참형은 조선봉건왕조의 생명형의 종류들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이였다. 때문에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저들이 가장 중시한 반역죄, 역적죄와 같은 범죄에 널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농민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그 폭동의 주동인물들에게 많이 적용하였다. 이것은 릉지처참형이 봉건국가의 안전과 국왕의 전제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수단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왕권과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범죄》에는 참형, 효수형, 효시형, 부관참시형, 교형 등도 적용되였다.

참형은 범죄자의 목을 잘라 죽이는 형벌이다. 이것을 일명 참수형이라고도 한다.

참형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을 비롯한 조선봉건왕조의 법전들과 규정들에 규정된 사형종류의 하나였다. 참형은 사지를 찢어 조리를 돌리는 릉지처참형보다는 가벼우며 목을 매다는 교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금에게 저촉되는 불온한 말을 한자, 인장을 위조한자는 참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참형의 적용조건들은 이외에도 《경국대전》을 보충하는 규범들에 적지 않게 규정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법전들인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등과 규정들에도 참형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된 참형이 전적으로왕과 왕권을 보호하며 봉건통치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인 통치수단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형은 집행후 처리방법에 따라 효수와 효시로 구분되였다. 그러나 효수와 효시는 사형의 한 종류로 적용되기가 일쑤였다.

효수형은 범죄자의 목을 잘라 머리를 문루(성문과 그 우의 루각)나 장대에 달아매는 형벌이였다.

15세기 즉 조선봉건왕조전반기에는 주로 반역행위에 효수형을 적용하였다. 조선봉건 왕조후반기에 와서 효수형의 적용범위는 더욱 확대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왕과 왕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릉지처참형과 함께 효수형을 널리 적용하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자거리에서 집행하였다. 효수하는 방법은 주로 장대끝에 머리를 매거나 문루에 달아매는것이 기본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이런 잔인한 형벌을 규제한것은 왕과 왕권의 침해자들을 철저히 탄압하는것과 함께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방법에 의하여 처형하는것을 사람들 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봉건국가와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여나서지 않도록 위협하자 는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에서 효시는 《죄인》의 머리를 자른 후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사방에 돌리는 형벌이였다.

효시형은 효수형에 이른바 《회시》라는것까지 덧붙인 형벌로서 효수형보다 더 중한 형벌이였다.

15세기에는 효수와 효시를 갈라서 정식 법전에 규정한것은 없고 일련의 형사규정들과 《경국대전》의 보충규범들에 규정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법전인 《속대전》에 와서 효수와 효시는 등급상 차이를 두고 구별되여 규정되였다.

효시형는 원래 군률에 속하는 형벌로서 군사와 관련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오면서 봉건국가의 재정질서를 엄중히 침해하는 범죄까지 확대되여 적용하였다.

왕권과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범죄》에는 부관참시형도 적용되였다.

부관참시형은 죽은 후에 역적으로 판명된 사람의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여 목을 자르 는 형벌이였다.

부관참시형은 범인이 형벌을 언도받기 전에 죽은 경우와 죽은 후 역적죄로 몰린 경우에 적용하였다. 부관참시형은 연산군통치시기에 특히 많이 적용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정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설사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하더라도 기어이 형사적탄압을 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봉건지배계급의 정권을 반대하여 일어나지 못하도록 위협하려고 하였다.

범죄자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서 매달아죽이는 형벌인 교형은 봉건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범죄자》의 아버지와 아들에게 련좌형으로 적용되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의하면 반역음모로서 사직을 위태롭게 하거나 큰 역적음모로서 종묘나 산릉, 왕궁을 파괴하기 위하여 음모한 《범죄》의 주모자와 공모자의 아버지와 16살이상의 아들은 교형에 처하도록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왕권과 봉건통치제도를 유지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인민들의 《침해행위》는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여러가지 잔혹한 사형방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에 대하여 봉건통치배들 자신도 《나쁜 말을 하다가 법을 어긴자에 대하여 관청에서 정상의 경중을 물론하고 깡그리 반역죄로 몰아버리는것은 실로 적당치 않다.》라고 개탄하는 정도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생명형이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 인 통치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탄압함으로써 봉건지주들의 신분적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기때문이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저들의 특권과 계급지배를 유지하고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지배신분과 피지배신분으로 갈라놓았다. 지배계급신분에는 량반, 중인, 아전들이 속하였으며 피지배계급신분에는 량인과 노비, 그 중간인《신량역천》(신분은 량인이나《천한》역을 진 계층)이 속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귀한자가 천한자를 다스리고 천한자가 귀한자를 받들어 섬기는것은 당연한 하늘의 리치》이며 이것은 《정사하는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에 그 침해로 되는 행위들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계급신분적인 억압과 착취에 항거하는 인민들을 《강상죄인》(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인》)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도록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임금의 지시문을 받은 관리에 대하여 항거한 사람을 비롯하여 임금에 대한 봉건적《례의》를 위반한 사람은 가차없이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일반 강상죄에 대해서도 교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들씌우도록 하였다. 사건의 엄중성에 따라 릉지처참형도 들씌워졌다.

봉건통치배들은 노비들의 투쟁을 억제하고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봉건유교교리에 의한 《례의질서》에 철저히 얽어매놓는 한편 그 위반자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는 상전을 욕설하거나 상전의 비행을 고발한 노비에게는 교형을 적용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에서 노비정책의 반영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신분적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한것은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한 례의도덕질서를 철저히 세워 봉건지배계급에 대한 인민들의 무저항주의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생명형이 봉건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반동적 인 통치수단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나선 인민 들을 탄압함으로써 량반지주들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기때문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국가에 의한 전조, 공물, 부역, 신역 등을 통한 수탈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강화되였다. 여기에다가 개별적인 량반지주들은 저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리용하여 더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며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그리하여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계속되었으며 크고작은 농민봉기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조선봉건왕조는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으로부터 량반지주들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인죄》, 《상해죄》, 《구타죄》와 같은 범죄조건들을 설정하고 그 범행자들을 엄격히 탄압하도록 하였다.

노비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봉건국가 및 량반지주의 재산에 대한 《침해죄》를 들씌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교형, 참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였다. 왕과 왕실 및 국가재산의 《절도》, 《사기》, 《빼앗기》, 《강도》등 《범죄》에는 참형에 이르기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량반지주들의 개인재산에 대한 《절도》, 《사기》, 《빼앗기》, 《강도》 등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봉건국가와 량반지주들의 수탈에 의하여 강제로 빼앗긴 자기의 창조물을 되찾기 위한 인민들의 정당한 실력행사로부터 봉건국가와 지주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것이였다.

때문에 조선봉건왕조는 죄아닌《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형역을 지는 인민들이 그에 항거하여 《도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강화하였다. 《경국대전》의 《형전》에 의하면 《관청종으로 박힌 강도범》으로서 두번째로 도망친 사람과 도형, 류형, 안치, 부처의 형벌을 받은 사람 및 관청노비로 소속된 《절도범》으로서 세번째로 도망친 사람은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량반지주들의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릉지처참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이 들씌워 졌다. 고을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관할하는 고을 원을 죽인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며 노비 나 고공으로서 집주인이나 상전의 친척을 죽인 경우에도 릉지처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량반지주들에게 구타를 하였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노비가자기의 주인을 때렸거나 주인의 가까운 친척(주인이 죽었을 경우 다섯달동안의 상복을 입어야 할 대상 이상의 친척)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고공(머슴)으로서 주인의 상복을 입어야 할 대상의 친척이나 외조부모를 구타하여 절상(뼈를 부러뜨려 다치는것)이상의 상해를 입힌자는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을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관할하는 고을 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도 교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백성이 자기 고을 원을 때렸거나 노비(가내노비)가 상전을 때린것은 착취와 억압을 더는 참을수 없어 반항하여 가한 응당한 징벌이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와 권력을 리용하여 백성이나 노비를 소나 말처럼 때리면서도 그것을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제하지 않았지만 노비나 백성의 사소한 항거와 반항도 모독죄요, 구타죄요 하면서 가혹한 형벌을 들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형률에 규정한 생명형은 반인민적인 봉건통치제도와 신분적 인 예속 그리고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나선 인민들을 탄압함으로써 봉건국가 를 유지하고 량반지주들의 신분적특권과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우리는 봉건사회의 국가와 법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해주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